

□ 정부시책 □

공기반사업 우수기술개발인(Fellow)제도 도입

산업자원부는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에서 기술개발 책임자를 과제수행중에 자주 교체함에 따라 연구원의 사기저하, 기술축적기회 상실 등으로 기술개발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2회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개발 책임자중에서 우수기술개발인(Fellow)을 선정하여 향후 공기반사업 수행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궁극적으로 IMF체제를 극복하려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기업내에서 기술개발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이를 차단하고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는 우수기술개발인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업화 성공으로 무역수지개선 및 기술적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총괄책임자를 공기반사업 우수기술개발인(Fellow)으로 지정하여 공기반사업 우수연구원 인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사업추진시에 우대

키로 한 것이다.

< 우대 내용 >

- 공기반사업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를 생략하고 신규과제로 선정(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에 준하여 최장 3년동안 매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기술개발 자금의 사후정산제 실시로 소요개발자금 부담 완화
- 정부의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사업 참여 기회 부여 등

공기반사업 우수연구원은 기업,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개발 실무책임자 중에서 '98. 8월중에 추천을 받아 주요 개발실적에 대한 개발기술의 난이도, 기술개발로 인한 매출액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98. 10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기술개발인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연구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기술개발에 활력을 주며, 기술개발인에게 어려운 주위환경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과 기술인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이란 산업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써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산업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소재 · 부품기술 및 엔지니어링 · 시스템기술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정하여 3~5년 기간동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98년 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 확정

산업자원부는 단기간내에 조기실용화가 가능하고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분야를 개발코자 하는 기술혁신형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98년도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중 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금년도 지원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우선 I 단계('98. 5.~10.) 사업에 29억원(63건), 추진결과평가후 II 단계('98. 11~'99. 10) 사업에 나머지 금액(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에서 '98년 1월 15일에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청자격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으로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9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코자 하는 경우 자유로이 응모, 접수 하였다.

금년도 사업공고후 신청·접수된 187개 과제(139억원)중 전문가 심의·평가 결과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63개 과제(29억원)를 살펴보면,

- 지원대상 기업 모두가 3년이내 창업 중소기업이면서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또는 10억원 이내의 영세 중소기업이었으며
- 과제별 참여 연구원들은 연구능력이 우수하고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가 퇴사하여 1~2년의 창업준비 과정을 거쳐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 선정되었으며,
- 연구개발에 성공할 경우 상업화 가능성이 큰 우수기술 과제
- 핵심요소 기술로서 타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기술 과제

-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기술혁신형 과제 등이 선정되었다.
- 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은 '98년도 5월에 I 단계 사업으로 과제당 5,000만원 내외로 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6개월 동안의 연구성과가 우수한 경우 '98년도 11월에 II단계, '99년도 11월경에 III 단계로 각각 1.5억원 내외로 정부출연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 또한, 최종적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현재 산업기술개발 응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첨단기술·제품개발자금(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응자금으로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가능)을 후속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담보로 인정하는 기술담보제도의 적극 활용을 유도하는 등 성공한 벤처기업 기술이 사업화에도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혁신 자금지원 635개사 선정

'98년도 기술혁신개발자금 320억원을 지원 받을 635개 업체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이 자금을 지원받을 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6월중 협약을 체결, 착수금(정부출연금의 50%)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중 중간 점검을 실시, 기술개발 진행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성과금(나머지 50%)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된 업체의 기술분야별 현황을 보면 35개 기술분야 가운데 소프트웨어, 전자계 임 분야가 60개 업체로 9.4%를 차지했고 환경에너지(47개 업체 7.4%), 산업기계(47개 업체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벤처기업 우대조치에 따라 전체의 37%

에 달하는 236개의 벤처기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올부터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소기업의 경우 전체의 71%인 450개(벤처 포함) 업체가 선정됐다.

업체당 평균 5천만원이 지원돼 규모도 지난 해 4,500만원보다 늘어났다.

'98년도 기술혁신자금은 지난 1월 5일부터 10일까지 국립기술품질원과 11개 지방중기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2,145개 업체에서 2,615억원의 자금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97년도의 1,635개사보다 31%나 늘어난 것인데 중기청은 IMF체제하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이 자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예산의 8배가 넘는 업체들이 몰려 불가피하게 우수한 기술개발 과제가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점을 감안, '99년도 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10월경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기청은 '99년도 기술혁신개발자금으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또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과 관련, 현행 기술개발책임자의 학력제한(고졸 5년이상)을 철폐하고 신청시 제출토록 했던 선행기술조사서를 없애는 등 개선을 추진중이다.

기술혁신개발자금이란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사업 소요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개별업체의 기술개발 총 소요자금의 75% 이내에서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시 담보요구도 없이 무이자로 지원되며 상환의무도 없다. 다만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때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내면 된다.(1년거치 5년분할)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력 대체고용기업 지원 확대

외국인력을 내보내고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중 개정고시를 내고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고용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의 업체당 한도를 기존의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업체당 기본 2천만원에 대체고용 1인당 1천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기본 5천만원에 대체고용 1인당 3천만원으로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이같은 지원기준 상향조정은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나 지원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

에게도 추가 적용된다.

중기청의 이번 조치는 내·외국인간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격 적용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당초 공고일 이후에 외국인력을 출국시킨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자금지원 공고일(4월 21일) 이전이라도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자진신고기간('97. 12. 27~'98. 4. 30)내에 출국시키고 내국인을 대체고용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까지 포함시켰다.

이밖에 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을 활용중인 기

업의 경우 종전에는 연수만료와 출국 및 대체 고용이 이뤄진 경우에만 신청토록 하던 것을 연수만료 2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연수만료와 동시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中企 해외규격認證 본격 지원

중소기업 수출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온 해외인증 획득의 어려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수출오더를 받고도 수입국의 품질 등과 관련된 규격·인증을 따내지 못해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 전문기관 및 전문컨설턴트에 위탁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해외의 유명규격 획득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을 마련, 업체들로 부터 신청을 받아 예정이다.

해외유명인증 획득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및 컨설턴트로부터 해외기술정보 제공이나 인증마크 신청에서부터 제품시험, 인증획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 받게 된다.

중기청은 또 '99년중 37억원의 예산을 확보, 모두 500개 업체에 해외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70%(업체당 평균 7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99년중 자금지원 대상은 기계·전기분야로 국한되며 이어 2천년에는 의료기기분야를 추가해 1천개 업체, 2001년에는 전자제분야를 추가해 1천개 업체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당장 인증 획득이 시급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에 주력하고 하반기 중에는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고 “선정기준은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이 필요한 업체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인증획득에 필요한 해외규격 및 안전기준, 인증절차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등을 위해 CE(유럽공동체), UL(미국) 마크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지방순회 세미나를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세미나 일정은 △서울·경기=6월 23일 중기청 대강당 △전남·북=25일 원광대 강당 △부산·경남=26일 창신대 강당 △충남·북=7월 2일 대전·충남청 강당 △대구·경북=3일 대구 대강당 등이다.

중기청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에 해외인증정보방을 개설, 모두 24개국의 53종에 달하는 해외인증마크의 획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인증획득에 성공한 업체의 데이터베이스(1,441개 업체)도 서비스 중이다.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기관

지 원 기 관		전화번호 (FAX)	주 소
기 관 명	전담부서		
한국원자력물 시험연구원	대외협력과	02-960-8060 (960-8057)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130-060)
한국의류시험 연구원	대외협력과	02-925-2451 (925-2702)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2-22 (130-170)
한국화학시험 연구원	기술협력과	02-635-6107 (634-100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 (150-038)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특수시험과	0343-55-7654 (55-7307)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435-050)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	대외협력과	02-856-5623 (866-8626)	서울 관악구 신림 11동 1572-18 (151-021)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품질지도과	02-543-9013 (516-5398)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10 (135-120)
생산기술연구원	기술평가과	02-830-8106 (830-8110)	서울 강남구 금천구 가산동 43- 5 (153-023)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인증협력팀	02-860-1453 (860-1456)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 (152-050)
한국표준협회	국제인증부	02-369-8237 (369-81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150-010)
한국기계연구원	정책지원과	0551-80-3780 (80-3636)	경남 창원시 상남동 66 (641-010)
한국전자공업 진흥회	가전사업부	02-554-4126 (555-619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 (135-080)
한국산업단지 공단	경영지원팀	02-828-1941 (828-1950)	서울 동작구 대방동 49-6 (156-020)
중소기업진흥 공단	지도사업처	02-783-4481 (783-946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150-010)
13개			

주요 해외인증 제도

인증마크명	지 역	내 용	인증기관
UL	미 국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근거한 민간검사 규격에 의한 승인(전기 제품이 주류임)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E	E U	유럽공동체 지역의 EN 규격등에 의한 인증(기계안전, 압력 용기, 건설자재, 가스기구, 전기기구, 의료기구 등 의무화)	적합평가기관 (NB)
VDE	독 일	소비자용품안전법에 근거한 민간검사 기관의 인증	독일전기기술 협회
CSA	카 나 다	연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표준규격에 의한 인증(전기 기기 · 부품 및 가스기구류는 의무화)	카나다규격 협회
CCIB	중 국	IEC 규격에 의한 시험 인증(안전, 위생 제품)	중국상품 검험국
GOST	러 시 아	러시아연방국가 산업표준규격에 의한 인증(기계류, 선박, 가 전기기, 화학제품, 식품류 등을 의무화)	러시아표준측 정인증위원회
ETL	미 국	UL 기준으로 시험 인증(전기제품)	시험연구기관 (ETL)
JIS	일 본	일본산업표준 규격에 의한 인증(전산업 분야)	통상산업성
S	일 본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은 제품에 대한 인증(압력솥 등 8품목 강제 표시 의무화)	일본제품 안전협회
TE	일 본	일본전기용품취체법에 의한 형식승인(전기용품 의무화)	통상산업성
FCC	미 국	민간 부분의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방송, 통신 제품)	미연방통신 위원회
IWS	국 제	IWS의 국제적 품질규격에 의한 인증(양모제품)	국제양모 사무국